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106호

「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」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30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 예고

1. 제안이유

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- 라. 인구정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 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자치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: junani1@korea.kr) 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인구정책"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가 수립·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2.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- 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 - 4.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시행계획)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업)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
- 2. 중·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
- 3.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- 4. 인구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)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